

부산지방법원 2019. 10. 24 선고 2019가단2434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2019. 9. 26.

판결 선고2019. 10. 2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02. 3. 8. 접수 C로 마친 저당권설정등록에 대하여 2013. 3. 8.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원고는 2002. 3. 8. 피고로부터 1,000만 원을 변제기 2003. 3. 8.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별지 목록

기재 자동차에 주문 기재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록에 대하여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. 3. 8.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김영민

별지